

보도자료

2010. 9. 8 (수)

엠바고 없음

건강한 국민 행복한 생활
저 출산 고령화 사회 국민건강증진 도우미
21C 체육지도자연합
since 1999

KACEP
대한운동사협회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Exercise Professionals

◇ 내용 문의 : 대한운동사협회 사무총장 안근옥 / 운동사법제화위원회 간사장 김용권
Tel. 02-586-3813 <http://www.kacep.or.kr>

보건복지부 “운동사(運動師) 자격인정” 대토론회 -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과 운동사의 역할 -

Exercise is medicine! 오늘날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은 의약의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운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고령화사회 의료비를 절감시키며 U-Health와 같은 융합산업 시대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주요 아이템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에서 일하는 체육지도자들은 기간제·저임금 대우 속에서 무자격·자질 시비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운동생리학 박사가 건강·체력(Health/Fitness) 현장에서 운동 사업을 하던 중 의료법위반 광고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대법원으로 무죄확정을 받았습니다. 비만관리 현장에서 체지방분석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였다하여 의료법위반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불기소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각종 보험의 인정급여 항목에 운동이 빠져 있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핵심적 내용이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에 의사·한의사, 간호사, 영양사만 포함되고 체육지도자(또는 운동전문가)를 제외시킨데 대하여 체육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밖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로 할 것이라는 단서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보건복지부에 운동전문가 자격제도가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과거 우리 체육계는, 1995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운동처방사 자격제도를 설치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이견으로 무산되고, 건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미완성의 ‘(1급생

활)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가지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임상운동사 자격제도 신설”을 시도했으나 체육계 및 부처 간의 견해차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전례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볼 때 아직도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괴심과 슬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요내용은 영양과 운동입니다.

영양사는, 과거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령인 ‘영양사에관한규칙’으로 자격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발의에 앞서 금년3월에 국민영양관리법(2020.9.27시행)이 제정되었습니다. 영양사의 모범이 생긴 셈입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 운동사 자격인정을 목표”로 국회에서 두 차례 대토론회를 가진바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자격제도 신설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체육계의 견해 차이를 일소하고 대학의 학과 명칭의 통일, 교육과정의 표준화 그리고 운동효과의 증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안을 드리고 체육계의 총의로서 관계기관에 “운동사 자격인정”에 대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 음]

보건복지부 “운동사 자격인정” 대토론회 개요

- 일시: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13:00-18:00
- 장소: 국회도서관대강당
- 주제: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과 운동사의 역할
- 주최: 대한운동사협회, 국회문화체육관광포럼
- 주관: 운동사법제화위원회, 전국운동사관련학과교수협의회
- 후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학회
- 참가단체: 체육/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프로그램

13:00 등록확인

사회: 박종성(명지대 교수, 대한운동사협회 이사장)

13:30 제1부 개회식

개회사: 안민석 국회의원

축사: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축사: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축사: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축사: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회장

축사: 김종완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격려사: 김승철 한국체육학회장

격려사: 강상조 대한운동학회장

14:00 제2부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사회: 박종성(명지대 교수, 대한운동사협회 이사장)

[발제]

1.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보건복지부 운동사 자격인정의 필요성과 당위성(길재호; 경희대 교수, 운동사법제화위원회 위원장)
2. 유능한 운동사 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과과정 및 시설기자재 설치기준(정덕조; 서원대 교수, 운동사법제화위원회 교육간사)
3. 운동이 질병예방에 미치는 효과 및 임상 운동 관리지침(제세영; 서울시립대 교수, 운동사법제화위원회 학술간사)

[지정토론]

1. 체육지도자의 직역중재 방안(김기진; 계명대 교수, 운교협 회장)
2. 운동사 특성화 대학의 조건 및 발전방향(김병로; 창원대 교수, 운교협 학술부회장)
3. 질환별 운동효과 및 임상 운동관리 지침
 - 고혈압(이상기; 충남대 교수, 운교협 회원)
 - 당 뇨(이종삼; 대구대 교수, 운교협 회원)
 - 비 만(신윤아; 단국대 교수, 운교협 운영위원)
 - 퇴행성 관절염(박기덕; 남서울대 교수, 운교협 회원)
 - 심혈관질환(이한준; 울산대 교수, 운교협 운영위원)

* 운교협: 전국운동사관련학과교수협의회

17:00 제3부 종합토론

좌장: 옥정석(단국대 교수, 대한운동사협회 회장)

- 운동사 자격인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체육지도자 직역 중재(안) 관련
- 운동사 특성화대학 교과과정 및 실험실습기자재 건
- 성명서 및 탄원서 채택
- 기타사항

[운동사(運動師)의 활동상]



업무: 운동검사



업무: 개인운동지도



업무: 재활운동관리



업무: PAPS(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



교육: 운동사 자격연수



교육: 운동사 자격시험



교육: 운동사대회



학술: 세미나



사회봉사: 운동실천캠페인



사회봉사: 재활운동상담



사회봉사: 서해안기름유출



권익옹호: 정책대안제시